#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72

발의연월일: 2022. 8. 17.

발 의 자: 안병길·최춘식·이주환

구자근 · 김선교 · 김희곤

박대수 · 이종성 · 김태호

강민국 · 정점식 · 박대출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벌채 및 산림복원을 위한 산림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사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있음.

그런데 올 봄 강원도 및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로 고사한 피해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집중 호우 시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 발생이우려되어 피해목에 대한 신속한 벌채와 조림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유림의 경우 해당 지역 미거주 산주의 소재지 파악에 어려움으로 동의 받기가 쉽지 않아 산림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하여 신속성을 기하는 한편, 수집·이용할 수 있는 산주 개인정보의 범위도 주민등록번호, 거소지 및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산림사업에 있어 산림소유자 동의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

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법률 제 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개인정보(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로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성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거소지를 포함한다)
- 4.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의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 (생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	②
항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	
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	
자의 <u>개인정보(성명,</u> 주소 및	<u>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u>
전화번호로 한정한다)를 이용	
할 수 있다.	
<u>&lt;신 설&gt;</u>	<u>1. 성명</u>
<u>&lt;신 설&gt;</u>	2. 주민등록번호
<u>&lt;신 설&gt;</u>	3. 주소(거소지를 포함한다)
<u>&lt;신 설&gt;</u>	4.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
	<u> 함한다)</u>
<u>&lt;신 설&gt;</u>	③ 제2항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의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을 이용할 수 있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